|  |  |  |
| --- | --- | --- |
| **<다성시 총기구 및 분지기구**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 관리방법>에 관한 보충통지**  재예[2012]45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재정부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주재 재정감찰 전문인원 판사처; 중국인민은행 상해총국의 각 지점, 영업관리부, 성 정부 소재지(자치구 정부소재지) 도시 중심 지점,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중심지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 <다성시(跨省市) 총분지기구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 관리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재예[2012]40호)를 더욱 잘 실행하기 위해, 유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충 통지한다.  1. 분지기구 조사징수 수입의 귀속관련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2급분지기구에 대한 세무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2급 분지기구는 조사징수 소득세액과 체납금, 벌금을 지방귀속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급 분지기구 소재지로 귀속시키고, 국고에 납입한다. 남은 50%는 총기구에 분담하여 국고에 납입한다. 그중, 25%는 총기구 소재지에 귀속시키며, 25%는 전액 중앙국고에 납입하고, 중앙재정이 일정비율에 따라 각 지역에 분배한다.  2. 세액 체납금, 벌금수입의 귀속관련  조사징수 세액 체납금, 벌금수입은 다지역(跨地区) 구분귀속을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성시(跨省市) 총기구 및 분지기구가 납부한 기타 기업소득세 체납금과 벌금수입은 다지역 구분귀속을 시행하지 않고, 규정된 국고납입 절차에 따라 납입한다.  3. 예산 계정과목 조정관련  재예[2012]40호 문건과 2013년 <정부수지 분류계정과목>중 1010450항목 명칭을 “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이자수입”으로 수정한다. 1010450항 01조항의 명칭을 “내자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 이자수입”으로 수정한다. 02조항의 명칭을 “홍콩, 마카오, 대만과 외상투자기업의 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 이자수입”으로 수정한다. 03조항의 명칭을 “중앙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 이자수입”으로 수정한다. 계정과목의 구체적인 수정정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4. 국고납입 절차관련  분지기구가 분담한 조사징수 세액의 입고 예산과목은 1010449항 “분지기구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관련 목급(目级) 계정이며, 급차(级次)는 “중앙 60%, 지방 40%”이다. 체납금과 벌금의 입고 예산과목은 1010450항 “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 이자수입” 관련 목급 계정이며, 급차는 “중앙 60%, 지방 40%”이다.  총기구가 분담한 조사징수세액 입고 예산계정은 1010442항 “총기구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관련 목급 계정이며, 급차는 “중앙 60%, 중앙 20% (분배대기), 지방 20%”이다. 체납금과 벌금 입고 예산계정은 1010450항 “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 이자수입” 관련 목급 계정이며, 급차는 “중앙 60%, 중앙 20%(분배대기), 지방 20%”이다. 국고부문은 총기구의 조사징수세액과 체납금, 벌금을 수취한 후, 60%를 중앙급 1010442항 “총기구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관련 목급 계정과 1010450항 “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이자수입” 관련 목급 계정에 산입하고, 20%는 중앙급 1010443 “기업소득세 분배대기수입” 관련 목급 계정에 산입한다. 나머지 20%는 지방급 1010442항 “총기구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관련 목급 계정과 1010450항 “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 이자수입” 관련 목급 계정에 산입한다.  5. 기타  본 방법 시행 후, 2012년 및 그 이전년도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기존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재예[2012]40호 문건의 규정과 본 문건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문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부록: 2013년 정부수지 분류 계정과목 수정 전후 대조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  2012년 12월 25일 |  | **关于《跨省市总分机构企业**  **所得税分配及预算管理办法》的补充通知**  财预2012]453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各分行、营业管理部，省会（首府）城市中心支行，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中心支行：  为更好落实《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中国人民银行关于印发〈跨省市总分机构企业所得税分配及预算管理办法〉的通知》（财预〔2012〕40号），现对有关事项补充通知如下：  　　一、关于分支机构查补收入的归属。二级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自行对二级分支机构实施税务检查，二级分支机构应将查补所得税款、滞纳金、罚款地方分享部分的50%归属该二级分支机构所在地，就地办理缴库；其余50%分摊给总机构办理缴库，其中，25%归属总机构所在地，25%就地全额缴入中央国库，由中央财政按照一定比例在各地区间分配。  　　二、关于税款滞纳金、罚款收入的归属。除查补税款滞纳金、罚款收入实行跨地区分享外，跨省市总分机构企业缴纳的其他企业所得税滞纳金、罚款收入不实行跨地区分享，按照规定的缴库程序就地缴库。  　　三、关于预算科目的调整。将财预〔2012〕40号文件和2013年《政府收支分类科目》中1010450项名称修改为“企业所得税税款滞纳金、罚款、加收利息收入”。1010450项下01目名称修改为“内资企业所得税税款滞纳金、罚款、加收利息收入”；02目名称修改为“港澳台和外商投资企业所得税税款滞纳金、罚款、加收利息收入”；03目名称修改为“中央企业所得税税款滞纳金、罚款、加收利息收入”。科目具体修改情况见附件。  　　四、关于缴库程序。分支机构分摊的查补税款入库的预算科目为1010449项“分支机构汇算清缴所得税”下的有关目级科目，级次为“中央60％、地方40％”；滞纳金、罚款入库的预算科目为1010450项“企业所得税税款滞纳金、罚款、加收利息收入”下的有关目级科目，级次为“中央60％、地方40％”。  　　总机构分摊的查补税款入库的预算科目为1010442项“总机构汇算清缴所得税”下的有关目级科目，级次为“中央60％、中央20％（待分配）、地方20％”；滞纳金、罚款入库的预算科目为1010450项“企业所得税税款滞纳金、罚款、加收利息收入”下的有关目级科目，级次为“中央60％、中央20％（待分配）、地方20％”。国库部门收到总机构企业查补税款和滞纳金、罚款后，将其中60%列入中央级1010442项“总机构汇算清缴所得税”下的有关目级科目和1010450项“企业所得税税款滞纳金、罚款、加收利息收入”下的有关目级科目，20%列入中央级1010443“企业所得税待分配收入”下的有关目级科目，20%列入地方级1010442项“总机构汇算清缴所得税”下的有关目级科目和1010450项“企业所得税税款滞纳金、罚款、加收利息收入”下的有关目级科目。  五、其他。  本办法实施后，缴纳和退还2012年及以前年度的企业所得税，仍按原办法执行。  　　财预〔2012〕40号文件规定与本文规定不一致的，按本文规定执行。    　　附件：2013年政府收支分类科目修订前后对照表(略)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中国人民银行  　　2012年12月25日 |